
입 법 정 보

2019-22호



목 차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4
2.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5
3.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5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6
5.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6
6.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7
7.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7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8
9.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8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9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13
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3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4
17.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
18.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6
19.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6
20.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7
2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1
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2
2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3
2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	
2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4
26.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5
27.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5
2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6
2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6
30.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7
3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8
3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28
33.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9

34.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0
35.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2
36.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3
3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35
38.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6
3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38
40.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8
4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9
42.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0
43.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42
4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43
4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3
46.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4
47.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44
48.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45
49.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5

정부입법 예고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11. 11.
- 마감일자 : 2019. 12. 23.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 15일 전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다시 발급하도록 하는 등의 연장신청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현재품질인증 표시 도안 및 색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본 도안을 참고하되 제품별 재질·디자인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양성분 함량의 색상 모양 표시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의 유형 정비(안 제9조의2제2항)

1) 표시 대상이 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

나. 품질인증 신청·변경신청 시 제출서류에 인용조문 정비 등(안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제13조의2제2항, 제19조제3항)

1) 품질인증 신청·변경신청 시 제출하는 영양성분 등 검사성적서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 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인용 조문 반영 등 다른 법령 제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등 정비

다. 어린이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제도 도입(안 제13조의3)

1) 어린이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3년이 만료되기 전 15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신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연장심사를 하여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하는 등 연장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라. 품질인증표시 도안 및 색상 기준을 기본 도안을 참조하되 제품별 재질·디자인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 4)

2.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11. 11. • 마감일자 : 2019. 12. 23.
-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사업의 추진근거, 지원기관 지정·역할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이 개정(법률 제 16538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등 신설(안 제8조의2제1항 ~제5항, 별표1)
 - 1)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의 신청 서류, 지정 요건, 지정 기간, 재지정절차 등을 명시
 - 나.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의 지원내용 신설(안 제8조의2제6항)
 - 1) 자금지원, 네트워킹지원, 교육 및 컨설팅지원, 판로지원 등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명시
 - 다.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시정명령 등 신설(안 제8조의2제7항, 별표2)
 - 1) 지정된 창업 지원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 취소 사항을 명시

3.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11. 11. • 마감일자 : 2019. 12. 23.
-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사업의 추진근거, 지원기관 지정·역할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이 개정(법률 제 16538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식 규정(안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 1) 농식품 벤처·창업지원기관 지정 신청서식, 붙임서류, 신청절차 등을 명시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1. 11. • 마감일자 : 2019. 12. 2.
-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관련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항목 신설(안 별지 제82호)
 - 1)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차량의 리콜 대상여부 및 이행여부 항목을 추가

5.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11. 11. • 마감일자 : 2019. 12. 23.
- 첨단 산업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경쟁력 강화 필요성 및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를 정비하여 융합학과 신설, 첨단학과 운영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이를 위해 대학이 둘 이상의 계열을 연계 융합한 학과를 신설하는 경우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해당 학과의 계열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융합학과 신설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결손인원을 활용한 학과 신설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정원 순증에 대한 예외를 부여하여 대학의 자율적 정원 조정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계열 간 융합학과 신설 기준 완화(안 제2조의3 제8항 신설)
 - 1) 대학이 계열 간 융합학과를 설치, 운영할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해당 학과의 계열을 「고등교육법」 제6조의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 결손인원 활용에 따른 학과(학부)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 기준 예외 마련(안 제2조의3 제9항 신설)
 - 1) 대학이 결손인원을 활용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학과 등을 신설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입학정원의 증가에 대한 학과(학부)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편제 완성연도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이 경우 증원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인원을 편제완성연도까지 이 영에 따

른 기준을 갖추어 타 학과 정원에서 감축할 것을 조건으로 함

6.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11. 11. • 마감일자 : 2019. 12. 23.
- 다양한 형태의 융합형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입학 단계의 모집단위와 연계되지 않은 융합학과의 신설 운영에는 법 제도상 한계가 있어, 모집단위와 관계 없이 융합형 교육과정 이수 가능한 학과 단위 등 학사제도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해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모집단위와 관계없는 연계 융합학과의 설치 (안 제19조의2 신설)
 - 1)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기 위하여 모집단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 나. 모집단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로 전과 허용(안 제29조 개정)
 - 1) 안 제19조의2에 따라 모집단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의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학과로의 전과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임

7.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9. 11. 12. • 마감일자 : 2019. 12. 23.
- 아이돌봄비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등으로 아이돌봄비 자격 제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자격정지 기간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에서 사유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로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확대하고자 함 (안 제16조[별표 5] 개정).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11. 12. • 마감일자 : 2019. 12. 23.
-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국민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인상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안 제18조 제2항)
 - 1)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2억원 상한을 폐지하고,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인센티브를 강화함. 다만,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의 금액을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제한할 때 기존보다 신고포상금이 감소하여 신고율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하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절한 신고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함.

9.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11. 13. • 마감일자 : 2019. 12. 13.
-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까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도록 법 제39조가 개정('18.3.27)됨에 따라, 예산과정의 범위, 주민참여수단, 의견수렴 결과의 반영 방법 등을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주민참여 범위를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명확화(안 제46조제1항)
 - 1) 예산편성의 방향 설정, 주요사업의 예산편성·집행·결산, 주요사업 평가·환류, 기타 조례로 정하는 전체 예산과정
 - 나. 주민참여 경로의 확대 및 다양화(안 제46조제2항)
 - 1) 공청회·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외에 상시 제안·숙의, 주민

참여예산기구 참여 추가

다.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의 반영 확대(안 제46조제3항)

- 1) 주민의견수렴 검토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던 것을 ‘예산과정에’ 반영하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공개정보 규정(안 제46조제4항)

- 1) 의견수렴 및 제안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근거 마련 및 주민제안사업 반영결과, 검토결과, 회의록 등 관련 정보 공개

마.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방향 및 기준 정립(안 제46조제5항)

- 1) 평가는 자치단체 제도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발전방안 제시, 정책자문, 우수사례 보급확산 등의 방법으로 실시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9. 11. 13.
- 마감일자 : 2019. 12. 23.

○ 게임제작업·제공업 등의 허가·등록 및 양도 상속 시 불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기타 법령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게임위에 개선조치 이행결과 제출 시 전자 문서로 제출 가능토록 명시 및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시 전자 문서 허용(제9조의6제3항, 제15의2제1항 개정)

나. 게임제작업·게임제공업 등 영업자의 변경허가·등록 및 지위승계 신고기한을 20일→30일로 연장(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다. 양도·상속 시 등록증 신고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지자체의 사실 확인이 가능하면 등록증 신고증등 서류제출 의무면제(제21조제1항 단서 추가)

라. 영업양도에 따라 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해 지자체 방문 시 양도인이 동행한 경우,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 제공(제21조 제2항 신설)

마. 게임제작업·게임제공업 등 변경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처리 기간을 3일로 단축(별지 제15호서식 개정)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 마.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위반 시 처분 강화(별표1, 별표2, 별표5)
 - 1) 적재물 낙하사고 방지를 위하여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위반 시 처분 강화
- 바. 업종 개편에 따른 입법미비사항 정비(별표2)
 - 1) 화물자동차법 개정('19.7.1시행)으로 기존 용달/개별 업종이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통합됨에 따라 과징금 금액 세부기준 정비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1. 14. ● 마감일자 : 2019. 12. 24.
- 「물류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운수사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위수탁차주의 권익보호강화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차고지 설치 지역 확대(제5조)
 - 1)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 확대
 - 나. 구난형 특수자동차 구난동의서 신설(제21조제21호)
 - 1)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 행위 전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하여, 구난 동의 여부에 대한 분쟁 사전 예방 및 요금 예측가능성 확대
 - 다.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동의서 첨부(제23조제2항)
 - 1)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를 통한 위·수탁차주의 생계기반 강제 이전 및 일방적인 위·수탁 계약 해지 방지를 위하여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시에도 위·수탁차주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개선
 - 라.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대상 확대(제23조제3항)
 - 1) 현재 운송사업자 간에만 가능한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를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에도 허용하여 위·수탁차주가 개인

운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2)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동일한 업종의 운송사업자를 찾기 어려워 충청남도까지 일부 양도·양수 가능 범위 확대

마. 대폐차 기간 제한 및 범위 규정(제52조의3)

- 1)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늘리는 대폐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2) 친환경 화물자동차는 대폐차 범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

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 완화(별표5)

- 1)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허가기준 대수를 500대에서 50대로 완화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9. 11. 14.

• 마감일자 : 2019. 12. 9.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부모 유족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는 현행법의 내용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8.6.28.)을 반영하여 같은 순위 보훈보상대상자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로 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부모에게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훈보상대상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절차(안 제9조의2 신설)

- 1) 보훈보상대상자 부모가 보상금을 분할 지급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9. 11. 14.

• 마감일자 : 2019. 12. 9.

○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부모 유족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는 현행법의 내용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8.6.28.)을 반영하여 같은 순위 국가유공자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로 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부모에게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절차(안 제9조의3 신설)

1) 국가유공자 부모가 보상금을 분할 지급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서식 규정 정비(안 제18조 개정)

1)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의2” 를 “제9조의2, 제9조의3”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영 제64조제5항에 따른 선순위 유족 지정서 : 별지 제13호서식

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9. 11. 14.

• 마감일자 : 2019. 12. 29.

○ 주요내용

가. 협의의 효력(안 제14조제2항 신설)

1) 협의의 효력은 협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변경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였다더라도 부모 중 1명이 보상금 분할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은 상실하도록 함

나. 보훈보상대상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방법(안 제14조의2)

- 1) 보훈보상대상자 부모가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보훈보상대상자 부모의 생활조정수당 균분(안 제15조제2항 신설)

- 1)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가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훈보상대상자 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분할 지급(안 제23조제1항)

- 1)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는 국가유공자 부모가 수당 지급대상자(고령수당, 2명 이상 사망수당)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9. 11. 14.
- 마감일자 : 2019. 12. 29.

○ 가. 국가유공자 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분할 지급(안 제23조제2항)

- 1)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는 국가유공자 부모가 수당 지급 대상자(고령수당, 2명 이상 사망수당)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

나. 협의의 효력(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

- 1) 협의의 효력은 협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변경되지 아니하나,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였다더라도 부모 중 1명이 보상금 분할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은 상실하도록 함

다. 국가유공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방법(안 제24조의3 신설)

- 1) 국가유공자 부모가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국가유공자 부모의 생활조정수당 균분(안 제25조제2항 신설)

- 1)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생활 조정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마. 국가유공자 부모의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 1인 지정방법(안 제 6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 1) 국가유공자 부모의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장애여부, 질환유무,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지원이 더 필요한 사람을 지정하도록 함

17.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9. 11. 14. ● 마감일자 : 2019. 12. 26.
-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분야인 소프트웨어사업은 사업수행과정에서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나, 과업내용의 변경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계약금액의 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과업변경을 심의하기 위한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자의 과업변경요청시 처리기간을 단축하며,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계약금액 조정 등 후속조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고, 합리적 사업수행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완화(안 제14조의2)
 - 1) 위원 자격을 ‘4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 으로, ‘10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경력자를 ‘6년이상’ 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 자격 완화
 - 2) 위원회 구성 인원을 ‘10인 이내’ 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 로 변경
 -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원 추천 요청시 7일 이내에 추천
 - 나.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14조의3)
 - 1)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변경과 관련하여 과업

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 2)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자로부터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하도록 함
- 3) 국가기관등의 장이 사업자에게 과업변경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을 통지하여야 하는 기한을 30일에서 14일로 단축
- 4) 입찰공고시 과업변경 절차를 명시하도록 함

18.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1. 15. • 마감일자 : 2019. 12. 26.
- 규제의 재검토 대상인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 과 ‘항공보안업무 종사자 전문교육 지정’ 을 항구적 보안조치 및 교육기관 지정을 위해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규제의 재검토 기간을 조정(안 제20조)
 - 1)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20조 본문의 재검토 기준을 ‘2020년 1월 1일’ 로 변경하려는 것임
 - 나. 규제의 재검토 대상을 삭제(안 제20조)
 - 1)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호와 제3호를 삭제

19.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11. 18. • 마감일자 : 2019. 12. 30.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832호, 2018.10.16. 개정, 2020.10.17. 시행)됨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신청,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신청, 성능검사 항목·기준 등(안 제78조의3, 제78조의4)

1)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성능검사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성능검사의 항목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성능시험 결과 및 유지방법의 적절성으로 함

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방법(안 제78조의5)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및 유지방법의 적절성은 서류검사로 하고, 성능시험은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2)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성능검사가 완료된 경우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성능검사판정이 취소된 경우 판정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함

다. 수수료(안 제106조)

1)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 수수료 및 성능시험 수수료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정하며, 수수료를 정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20.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11. 18. ● 마감일자 : 2020. 1. 20.

○ 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 요건을 강화하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품목, 임상시험 계획 승인 등의 관리를 위한 전자원부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를 권장하고, 의약품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기한을 연장하며, 우선판매품목허가권자의 판매금지 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를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 요건 강화(안 제4조)

- 1)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신청 시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 생물학 적동등성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을 전문의약품 전체로 확대하고,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품목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이미 품목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의 제조소에 해당 제조소의 품목과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도록 위탁하고자 할 때 평가자료 제출 없이 허가 신청할 수 있던 것을 예외없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허가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용 대상 확대(안 제4조, 제48조)

- 1) 내시경 기구 등 의료기기의 소독에 사용하는 소독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용에 제외되던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제품(소독제등)’에 대하여 적용(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제품은 제외)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다. 의약품 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 관리를 위한 전자원부 도입(안 제5조의2신설, 안 제8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의3,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1조, 제58조, 제59조, 제96조, 제97조, 제100조, 제103조)

- 1) 유지·관리하기 번거로운 종이허가증 대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 열람이 용이한 전자원부를 도입하고 전자로 허가증 등의 국가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종이허가증 수령, 제출 및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의약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임상시험계획 변경보고 대상 확대(안 제24조)

- 1) 임상시험계획이 변경되어 변경승인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 동안 임상시험 중지로 인하여 참여자 치료가 제한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변경승인 대상 중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보고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자 함.

마.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현지실사 경비의 수익자 부담 근거 마련(안 제24조)

- 1) 임상시험계획 승인 시 외국에서 현지실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승인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바.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준수 권장 및 적합판정서 발급(안 제48조, 제48조의2)

- 1) 마스크,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의약외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외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준수를 권장하고, 또한 이를 준수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사. 의약품 등의 생산·수출·수입 실적 보고대상 정비(안 제49조)

-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의 생산·수출·수입 등 취급의 보고 제도 시행에 따라, 현행의약품 생산·수출·수입 실적의 보고 대상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함으로써 제약업체의 이중보고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아. 의약품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기한 연장(안 제49조)

- 1)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이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의 공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보고하던 것을 대체 의약품 허가 및 생산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180일 전까지 보고하도록 함

자. 통지의약품에 관한 정보공개 사항 확대(안 제62조의4)

- 1) 특허목록에 의약품특허권이 등재된 ‘등재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허가 신청하고 그 사실을 특허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통지의약품’에 관하여 그 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정보로서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공개 내용에 안전성·유효성 자료의 근거가 된 등재의약품의 명칭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효용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차. 우선판매품목허가권자의 판매금지 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

명확화 (안 제62조의9)

- 1) 우선판매품목허가권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약제의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판매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판매금지 연장 신청 절차가 없어 민원인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으므로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서류 등을 명확화하여 민원 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카. 등재료 납부절차 개선 (안 제102조의2)

- 1) 특허권등재자가 등재료를 등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식약처장은 등재료가 미납된 경우 특허권을 목록에서 삭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미납한 경우 1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타. 의약품등 안전성정보의 신속보고 기한 단축 (안 별표 4의3)

- 1) 의약품등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중지나 회수에 준하는 외국 정부의 조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정보를 알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던 것을 3일 이내(단, 국내에서의 조치현황은 7일 이내 보고 가능)보고하도록 그 보고기한을 단축하고자 함

파. 안전관리책임자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안 별표8)

- 1)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식약처장에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없어 제조관리자 또는 수입관리자를 변경 또는 폐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하. ‘안정성에 관한 자료’ 심사 처리기간 단축 (안 별지 제4호, 제6호, 제8호 및 제41호서식)

- 1) 의약품 등의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기 위한 ‘안정성에 관한 자료’가 의약품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의 일환으로 분류되어 있어 심사에 동일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안정성에 관한 자료 검토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1. 18.

• 마감일자 : 2019. 12. 30.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기한(60 → 30일)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 금지, 국토부 거래신고내용 조사권 신설 및 자료요청 권한 부여, 외국인 신고내용 조사 및 타법위반 조치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94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조사권 위탁,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조사 필요자료 규정,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 기준 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료의 제공 요청(안 제4조의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이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세·지방세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외국인의 건축물 신축 등에 따른 신규 건축물 취득신고 대상 신설(안 제5조제1항제4호)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이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를 계약 외 취득으로 보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함.

다. 토지거래허가 시 허가대상자의 거주지 규정의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1호사목 및 영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그 토지 매수자가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 등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라. 신설 금지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안 제19조의2제1항 및 제3항) 법 제25조제1항제1의2 또는 제1의 3에 따라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로 인해 법 제28조에 따른 거짓신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건당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안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제3호) 법 제

6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20조)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 도입 및 금지행위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사.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안 제21조)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조사 주체에 국토교통부장관도 포함하고 조사 시작 이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1. 18.

• 마감일자 : 2019. 12. 30.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2018. 2. 21.)됨에 따라 산림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중 실험실 규모 완화 및 지정 처리 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품질인증기관의 애로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등 발생 시 해제신고(안 제5조) 법 제3조의2에 따라 계약 해제등 발생 시 해제신고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나.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에 대한 준용규정(안 제5조의2) 부동산 거래의 신고, 변경 또는 정정신고, 해제 등 신고에 관한 준용규정을 두고자 함.

다. 외국인등의 건축물 신축 등에 따른 취득 신고 제출서류 등 외국인등의 신축 등 건축물 취득 신고시 제출서류를 규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1. 18. • 마감일자 : 2019. 12. 30.
- 정부는 민간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민간의 창의력과 활력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한 곳에 주거, 문화 등 정주시설은 물론 산업, 연구, 관광 등 자족적 복합 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기업도시개발 제도를 2005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한편 기업도시에 공공기관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공기관 등과 연관된 기업의 기업도시 이주를 촉진하고, 이미 입주하였거나 입주예정인 기업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침체된 기업도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가. “토지의 직접 사용” 규제 완화(안 제30조)
 -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5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도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 2) 이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자 직접사용으로 인정하는 비율도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확대함

2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9. 11. 18. • 마감일자 : 2019. 12. 30.
- 서비스산업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에 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중견기업 확인요건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가능 업종 확대(안 제2조제5호, 제16조의2 제4항, 별표1)

- 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서비스분야 업종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현행 19개 업종에서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

나. 중견기업 확인요건 기준 완화(안 제16조의2제1항제4호)

- 1) 중견기업의 연구전담요원 기준(7명)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중견기업 중 직전 3개 사업연도에 따른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2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9. 11. 18. • 마감일자 : 2019. 12. 30.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근거 및 연구전담요원의 해당기업 소속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의 제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의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완화(안 제2조제3항, 제2조제4항)
 - 1)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중 연구개발활동 분야 관련성에 대한 요건을 삭제하고 학위, 자격증, 연구경력 등으로 요건 단순화
 - 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이용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제4호)
 - 1)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다. 중소기업 증명 서류 제출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제13호, 제4조제1항제4호)
 - 1)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라. 연구전담요원의 해당기업 소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제14호, 제4조제1항제5호)
 - 1) 기업부설연구기관의 연구전담요원이 해당기업의 소속직원임을 확인·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마. 변경신고 의무사항 완화(안 제5조제2항, 별표)

1) 변경신고 사항을 간소화하고, 신고 기한을 14일 → 30일로 확대

26.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11. 20.
- 마감일자 : 2019. 12. 30.

○ 주요내용

가.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완화(안 6조제3항 신설)

- 1) 「온천법」 제7조제2항에서 위임한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등록기준을 규정하여 전문인력기준 완화

나. 온천도시 지정기준 및 해제기준 마련(안 6조의2 신설)

- 1) 「온천법」 제9조의2에서 위임한 온천도시 지정기준을 온천현황, 이용인원, 온천시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시설계획 등으로 하고 온천도시 해제기준을 허위자료 제출, 온천시책 미이행 등으로 규정

다. 온천이용시설 확대(안 17조제5항 개정)

- 1)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위임한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조례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 추가

라. 일반인에게 온천정보 제공 근거 마련(안 20조제3항 신설)

- 1)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자료, 온천자원조사 자료, 온천자원관측조사 자료 등을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7.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11. 20.
- 마감일자 : 2019. 12. 30.

○ 주요내용

가. 온천도시 지정절차, 지정기준 등 마련(안 4조의2 신설)

- 1) 「온천법 시행령」 제6조의2제4항에서 위임한 온천도시의 지정과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온천도시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지정기준 등을 규정함.

나. 온천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강화(안 별표 3 개정)

1) 욕수의 수질기준에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를 초과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mg/l 이상 0.4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2) 레지오넬라균 검사량, 검사방법 등 세부사항을 제시함

다. 특별자치시장에 대한 권한 부여 등 미비한 사항을 반영(안 3조 등 개정)

2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11. 20.

• 마감일자 : 2019. 12. 31.

○ 법제처의 「과태료금액 지침」에 따라 상위 법률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불필요한 절차 서류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귀항하는 선박의 신고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항만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별표 2 개정)

1) 법률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한 과태료 대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

나. 긴급한 사유로 귀항하는 선박의 전자적 신고 허용 (안 제2조 제3호 등 개정)

1) 피난, 수리 등의 사유로 12시간 이내에 출항한 선박이나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해 입출항 하는 선박의 신고를 서면 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

2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11. 20.

• 마감일자 : 2019. 12. 31.

○ 원활한 항만 운영을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외항선의 선사, 승무원, 승

객 정보를 파악하는 한편, 예선 또는 도선 사용 면제 항목을 추가하여
항만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선사 정보 기입 및 승무원 승객 명부 제출 의무화(안 제3조 제2
항 개정 등)

1) 외항선 출입 신고서에 선사 정보를 기입하도록 개정하고, 승무
원, 승객 명부도 제출하도록 외항선 출입신고서 개정 및 관련
명부 서식 신설

나. 예선 및 도선 사용 면제 항목 추가(안 별지 제1호, 제2호 개정)

1) 항만 이용자가 예선 또는 도선 사용시 선박 출입 신고서에 예선
또는 도선 면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선박 출입 신고서 개정

30.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11. 20. ● 마감일자 : 2019. 12. 30.

○ 「전기사업법」(법률 제16364호, 2019.4.23. 공포, 2019.7.24. 시행) 개정
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
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
정함. 다만,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사업에 대한 허
가, 인가 등의 대부분의 권한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
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 개정에 따른 신
고·수리 등의 권한은 위임되지 못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법」 개정(법률 제 16364호, 2019.4.23. 공포)으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지위승계 관련 발전시설 용량 3
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
한을 위임 하고자함(안 제62조)

3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11. 20. • 마감일자 : 2019. 12. 30.
- 「전기사업법」(법률 제16364호, 2019.4.23. 공포, 2019.7.24. 시행) 개정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함.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사업에 대하여는 동 법률 개정에 따른 신고·수리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도록 시행령을 개정 추진함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조항 및 별지서식에도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의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함(안 제9조의2)
 - 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신고서」의 처리 절차도 등에 시·도지사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개정

3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9. 11. 20. • 마감일자 : 2019. 12. 31.
- 그동안 보훈대부는 시중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2%(일부 3%) 이율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최저 1.8% 수준의 대출상품(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었음. 이에 보훈대부 연이율을 시중대출보다 낮은 2퍼센트 미만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국가보훈처장이 연이율을 최저 2퍼센트에서 최고 12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보훈대부의 최저 연이율 하한을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낮추어 시중의 저금리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최고 연이율 상한을 12퍼센트에

서 5퍼센트로 낮추어 지속적으로 보훈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대부금의 이율 범위를 연 2~12%에서 연 1~5%로 낮추고자 함(안 제39조)

33.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11. 21.
- 마감일자 : 2019. 12. 31.

○ 공정한 해상운송 거래질서 정착 및 선화주 기업 간 상생협력 등을 위한 「해운법」 개정('19.8.20 공포)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관련 제반사항 및 그 밖에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제제기준 강화 및 기타 법령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반복적 운항 중단 시 면허 취소 예외(안 제12조의 4)

1) 여객운송사업자가 연속하여 60일 이상 2번, 또는 120일 이상 운항 중단 시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토록 하고 있어, 천재지변, 항만시설 등의 장애, 테러·전염병 등으로 운항 중단이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면허취소의 예외로 함.

나. 표준계약서의 작성·보급·활용 단체(안 제14조의2 신설)

1) 표준계약서의 제작·보급·활용토록 할 수 있는 해운관련 단체로 「민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선주협회를 정함.

다. 부정수급 유류공급업체 제재기준 강화(안 제21조의3 개정)

1)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부정수급에 공모·가담한 유류공급업체에 대한 제재기준을 1회 위반 시 6개월에서 3년으로,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년에서 5년으로 상향함.

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주체 및 대상(안 제22조의2 신설)

1)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며, 인증대

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주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로 함.

마. 인증기업의 점검(안 제22조의3 신설)

1)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의 인증기준 유지여부를 3년마다 점검토록 하며, 연 1회에 한하여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인증전담기관의 지정(안 제22조의4 신설)

1) 인증전담기관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지정하며, 인증전담기관의 업무로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인증심사 계획 및 점검계획의 수립, 결과보고, 인증심사위원의 관리, 인증제도 및 인증기업에 대한 홍보, 인증제도에 대한 연구 등을 정함.

사.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27조제4항제4호 및 제6항 개정)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항한 때의 신고수리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 여부와 공표된 내용의 확인과 검토, 제2항에 따른 공표 유예되거나 신고된 운임 및 요금의 확인과 검토 업무를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에 위탁함.

34.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11. 21. • 마감일자 : 2019. 12. 31.

○ 공정한 해상운송 거래질서 정착 및 선화주 기업 간 상생협력 등을 위한 「해운법」 개정('19.8.20 공포)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관련 제반사항 및 그 밖에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 기타 법령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여객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하나,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사유로 항만시설의 장애, 테러 및 전염병 발생 또는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이 필요하여 운항이 지연되는

경우 등은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신고는 문서 또는 전문(電文)으로 사업계획서상 출항시각 10분 전까지 하도록 함.

나. 운항관리자의 직무 구체화(안 제15조의12 개정)

- 1)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운항관리자가 직접 승선하여 선장 등과 출항 전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은 ‘출항 전 점검의 확인’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조문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선장 등과 출항 전 합동점검 및 점검보고서를 확인’으로 규정함.

다. 임시 선박국적증서 인정(안 제16조제1항 단서 개정)

- 1)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시 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경우 최초 운항 전까지 선박국적증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이때, 정식 선박국적증서 구비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임시 증서의 제출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 선박국적증서에 임시 증서를 포함함.

라. 운임 및 요금의 공표 기한 및 방법(안 제20조제1항 개정)

- 1) 화주 등이 운임을 쉽게 확인·비교하여 계약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표기한 및 방법 등에 대한정비가 필요하여, 공표 기한을 운임발효 예정 5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표토록 함.

마. 운임 등의 공표 유예 또는 신고 대체 방법(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1) 운임 및 요금의 공표가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나 특정 산업 또는 품목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임 및 요금의 공표 유예 또는 신고 대체가 가능한 바, 공정한 경쟁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운임 등의 적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며,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일 15일 전까지 장기운송계약서를 제출토록 함.

바. 금지행위 등 위반에 대한 변경·조정명령의 방법(안 제20조의2 신설)

- 1) 금지행위 등의 위반에 대한 변경·조정 명령 시 변경 또는 조정

명령의 내용과 이행방법, 수용여부에 대한 통보 기한, 이행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함.

사.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심사기준 및 절차 등(안 제26조의6 ~ 제26조의7 신설)

- 1)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심사기준 [별표 4의2]를 신설하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신청서에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최근 3년간 해상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 제 제출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90일 이내에 심사 함.

아.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안 제26조의8 신설)

- 1) 인증전담기관은 인증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물류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함

자.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의 표시(안 제26조의9 ~ 제26조의10 신설)

- 1)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 결과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기업은 해당기업이 취급하는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음.

차. 고시·훈령의 위임의 근거 규정 마련(안 제5조제3항후단, 안 제5조제7항, 안 제11조제2항, 안 제16조제6항, 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 1) 법령에 위임 근거 없이 현행 고시·훈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35.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11. 21.

• 마감일자 : 2019. 12. 31.

○ 총허용어획량 기반의 어업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을 확대하는 등 건전한 조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확인 절차 마련(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1) 지정된 양육·매매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혼획의 허용범위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 혼획이 허용된 업종의 경우 혼획된 어획물을 지정된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도록 규정(수산업법 제41조의3제4항)

나.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 확대(별표 7 개정)

1) 조업자제선을 넘은 경우에는 재허가 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국제기구 또는 연안국의 관할수역을 침범하는 등의 경우에는 10개월에서 2년으로, 그 밖에 동 법에 따른 명령·처분 등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10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다.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근거 마련(안 제41조의4 및 별표10 신설)

1) 어획량 제한기준 충족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동안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도 불구하고 어구의 규모등을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동 법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기간과 어구의 규모등을 규정

36.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11. 21. • 마감일자 : 2019. 12. 31.

○ 총허용어획량 기반의 어업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처분 제도를 개편하는 등 건전한 조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근거 마련 (안 제45조의3제5항 및 제6항 신설)

1) 정부는 기존 어구어법(input control)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를 총허용어획량 중심(output control)으로 전환 중에 있어, 어획량 제한기준, 어선위치발신장치 부착 등의 일정한 요건을 따르는 경우 동 법령에서 정한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일부 완화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불법어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 개선 (안 제79조 개정)

- 1) 현행법상 불법어업으로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하고 있어, 과징금보다 불법어업으로 인한 기대수익이 높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선 위치 미보고, 수산자원관리 위반 등 중대한 불법어업에 대하여는 과징금이 행정처분(어업정지)을 대신할 수 없도록 규정

다. 대게류 자원보호를 위한 포획금지 규정 강화 (별표 3의3 개정)

- 1) 대게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북 일원에 통발어업의 대게포획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나, 붉은대게통발 등을 사용하여 대게를 포획하는 경우가 있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동 금지구역에서 대게 포획 뿐 아니라 대게류·붉은대게류 통발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

라. 민꽃게류에 대한 그물코 규격제한 개선 (별표 3의4 제2호 개정)

- 1) 현행 22mm 통발(통발 입구 140mm 미만)에는 상품가치가 낮은 작은 민꽃게만 포획된다는 어업인들의 민원이 있어, 둘레입구 제한이 없는 35mm 통발로 민꽃게를 포획할 수 있도록 규정

마.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사용을 위한 그물코 규격 등 설정 근거 마련 (별표 3의4 비고 개정)

- 1)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의 혼획저감을 위해 해양 포유류 혼획 우려가 있는 어업을 하는 경우 별표 3의4에서 정한 그물코 규격을 따르지 않고,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그물코 규격과 사용시기를 따를 수 있도록 규정

바. 기타 법률 제·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

- 1) 「수산업법」 일부 개정('19.7)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안 제 29조)
- 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5.3)됨에 따라, 위관장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43조 및 안 제44조)
- 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16.5)으로 수협의 지도사업을 담당하는 자가 상임이사에서 집행간부(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

를 보좌하는 사람)로 변경됨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도 상임이사 또는 집행간부로 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73조 및 안 제74조)

4) 연안선망어업은 본선만 있어도 어업허가가 가능함에도 현행 별표 1의2에서 규정한 어법에는 부속선이 있어야만 어업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는 바, 연안선망어업에 대한 어법과 조업모식도를 정비(별표 1의2)

5) 근해 선망어업에 대한 어구사용 금지구역 중 해석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해석상 이견을 차단하기 위해 어구사용 금지구역 자구 정비(별표 3의3)

3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9. 11. 21.
- 마감일자 : 2019. 12. 31.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이 2020.2.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은 조합의 공동사업 범위에서 가격의 공동결정행위를 제외하고 있으나 공동판매, 공동수주 등의 공동사업 추진 시 판매 및 구매 가격 등의 가격결정행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바, 가격 공동결정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합의 공동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가격의 공동결정행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적용 대상을 사업조합 및 연합회까지 확대(안 제9조제1항)

나. 법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9조의3)

38.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1. 21. ● 마감일자 : 2020. 1. 2.
-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사고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및 안전기준적합 여부 조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업무 총괄기관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소속된 직원이 사고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483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사고조사 대상을 건설기계로 인한 사망사고, 건설기계 전도사고 등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를 전국 시·도에서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5조)
 - 1) 건설기계 소유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를 등록지의 시·도에서 전국 시·도에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
 - 나. 건설기계 정기검사 신청기간 확대(안 제23조)
 - 1) 건설기계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내로 자동차(검사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이내)와 달라 소유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건설기계 정기검사 신청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하게 31일로 규정
 - 다. 타워크레인 검사 및 이력 등 건설산업정보와 연계 관리(안 제33조의2)
 - 1) 타워크레인 검사 및 이력 등 총괄기관이 수행한 결과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 라. 비자주식 건설기계 주행장치 탈거 허용(안 제42조의2 및 별표 8)
 - 1) 공기압축기 등과 같이 비자주식(동력원이 없어 스스로 이동이 불가) 건설기계에 대해 사용 여건이나 운행의 특수성을 고려하

여 주행장치를 탈거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탈거를 허용하고, 검사 편의를 위해 주행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하도록 규정

마.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명확화(안 제59조의2 신설)

1)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당사자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로 명확히 규정

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사진 반납 절차 마련(안 제80조제2항)

1) 건설기계조종사가 면허증을 사진 반납하려는 경우 관련 절차가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진 반납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사. 건설기계조종사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 기관 확대(안 제81조 및 제82조)

1) 건설기계조종사는 주소지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편 해소를 위해 주소지관할 이외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의무화(안 제83조의3제2항)

1)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의무가 없어,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 이수 확인이 불가하므로 안전교육 이수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

자. 건설기계 사고조사 대상 규정(안 제91조의2 신설)

1) 총괄기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할 대상으로 건설기계로 인한 사망사고, 전도사고, 마스트 또는 붐 등의 파손사고를 규정

차. 일몰해제 규제 정비(안 제97조)

1) 일몰규제 심사결과에 따라, 건설기계 정비업자 및 매매업자의 의무 등 일몰해제 대상 삭제 등 정비

카. 건설기계 대여업·매매업·정비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4, 별표 15 및 별표 16)

1) 대여업과 매매업을 동시 운영하거나 2 이상의 사업자가 사무실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무실 임대비 부담을 완화
2) 정비업 기술자의 정비기술 향상 및 기술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

설기계정비협회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정비업 등록기준의 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타. 건설기계 음주 조종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안 별표 22)

1)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강화(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 0.03퍼센트 이상)

3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 예고일자 : 2019. 11. 21. • 마감일자 : 2019. 12. 31.

○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법률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서 누락되어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156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고, 향후 입법상황 변동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 시 공익침해행위 해당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함

○ 주요내용

가. 사전협의제도 신설(안 제4조제4항)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개정 시 공익침해행위 해당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

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개정(안 별표 제142호)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제명 변경되었으므로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개정

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신설(안 별표 제285호부터 제440호)

1)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156개 추가

40.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11. 21. • 마감일자 : 2019. 12. 31.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됨에 따라 행정심판 및 소송이 빈발하고, 이로 인해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학교의 교육력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교내선도형 가해학생 조치(1~3호)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조치(1~3호)에 대해서는 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조치(1~3호)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지 않고 유보된 상태에서 해당 학생이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기존에 기록이 유보된 조치도 함께 기록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4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11. 21.

• 마감일자 : 2019. 12. 31.

○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이관하며,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조치에 이견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도록 재심절차가 폐지되는 등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 및 전문적 처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안 14조의 3, 제16조).

1) 학교폭력의 학교자체해결 이후에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 다만, 해당 학교폭력사건

으로 인해 피해자측이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측이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학교폭력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자체해결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재차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계회복에 노력하여야 함.

3)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 중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학교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이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심의위원회의 기능·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제14조의2).

1) 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명하도록 함.

2) 심의위원회 산하에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 의결 사항은 심의위원장 보고 후 심의위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절차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4조)

42.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9. 11. 21.

• 마감일자 : 2019. 12. 31.

○ IT기술의 발달 등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용수요가 감소한 대금교환 서비스를 폐지하고, 우편요금 수취인부담의 이용조건 등을 고시로 하향입법하여 신속한 우편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국무조정실 규제검토 결과 서신송달업의 휴업 폐업 등의 신고조항이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해제됨에 따라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택적 우편역무 보험취급 이용조건 개정(안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삭제)

- 1)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 등에 관한 사항은 고시에서 규정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단서는 삭제하도록 함

나. 선택적 우편역무 중 “대금교환” 폐지(안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32호~제36호 삭제)

- 1) 우편서비스 사업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다수의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 마련하기 위해서 기술을 발달로 이용수요 감소 및 서비스 제공의미가 퇴색된 “대금교환” 서비스를 폐지함으로써 우편서비스효율성 도모

다. 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요건 일부개정(안 제86조제6항)

- 1) 방문소포 외에 창구소포의 감액요건을 적용토록 규정을 보완하여 고시를 통해 방문소포 감액요건을 알림으로써, 이용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편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기반을 마련

라. “우편요금 등의 수취인 부담” 우편물 이용조건 등 하향입법(안 제86조~제96조)

- 1)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에서 “우편요금 등의 수취인 부담”의 이용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위임하여 우편서비스 환경에 빠르게 대처

마. “우편물 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21조2)

- 1)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조문을 명확하게 하여, 일반국민에게 우편서비스 제공

바.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145조제2호)

- 1) 상위법인 「우편법」 제45조의4에서 서신송달업의 휴업 폐업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서신송달업의 휴업 폐업 등을 신고하도록 한 「우편법 시행규칙」 제142조는 규제조항에서 해제되어, 규제의 재검토 대상 조항에서 삭제함

43.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11. 22.

• 마감일자 : 2019. 12. 4.

○ 약사법(법률 제14560호, 2017. 2. 8.) 제3조제2항제2호가 개정되어 외국의 약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의 약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예비시험에 응시해야 함에 따라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정하기 위함. 약국 개설 시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청하여야 하는 변경등록 신청대상 중 등록 요건이 아닌 약국의 영업면적을 제외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안 제2조, 별표 1)

1) 경인항, 인천항 등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정함.

나.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의 내용 등

1)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에 어린이, 노인 등 대기오염에 취약한 계층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등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정함.

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측정망의 설치 및 실태조사 등(안 제5조)

1)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측정망의 범위를 정하고,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항만지역의 실태조사 시 조사계획 및 실태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평가 등을 위한 연구를 하도록 함.

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등(안 제6조, 별표 3)

1) 배출규제해역 내에서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0.1퍼센트(무게퍼센트)로 정하되, 선박이 계선 중인 경우와 선박에서 연료유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나누어 그 적용 시기를 달리 함.

마. 저속운항선박에 대한 지원(안 제7조)

- 1) 해양수산부장관은 저속운항해역에서 저속운항 권고에 따른 선박에 대해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 저속운항 방법에 관한 지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바.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의무 대상(안 제8조)

- 1) 군함 등 방위·치안용으로 사용될 선박 등을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의무가 면제되는 선박으로 정함.

사.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안 제9조, 별표 4)

- 1) 항만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을 하역장비의 제작 시기 및 엔진 출력을 기준으로 정함.

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대상 항만 등(안 제10조)

- 1) 컨테이너선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등을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는 항만시설 정하고, 해당 항만시설 중 전력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 육상전원공급설비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의무를 면제함.

4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11. 22. • 마감일자 : 2019. 12. 13.
- 급격한 대내외 산업 환경변화를 고려하고 R&D 투자의 적시성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장 및 투자관리자(MD) 임기를 개정함
- 주요내용
 - 가. 단장 및 MD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한하여 연임 가능(안 제1조의 3)
 - 1) 현행 규정은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급격한 대내외 산업 환경 변화의 반영과 R&D 투자의 적기 대응에 한계가 있음

4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1. 22. • 마감일자 : 2020. 1. 3.
-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및 안전기준 적합

여부 조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업무 총괄기관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소속된 직원이 사고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483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규정(안 제18조의4)

1)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업무 처리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자료 필요

2)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및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사무를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로 규정함

나. 사고현장 출입 방해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3)

1) 총괄기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사고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함

46.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1. 22. ● 마감일자 : 2019. 12. 6.

○ 사업용 화물차 통행료 부담 경감 및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해 '19.12.31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하여 고속도로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물차 심야할인의 유효기간을 '19.12.31에서 ' 20.12.31로 1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47.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11. 22. ● 마감일자 : 2019. 12. 31.

○ 국정과제 '49-1.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의 주요과제인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통해 학부모의 국공립 유치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 단지 건설

시 공급하는 유치원 시설 등을 공립유치원의 분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립유치원 분원 설치 근거 마련(안 제9조의3 신설)

48.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11. 22. • 마감일자 : 2019. 12. 31.

○ 그동안 유아의 보호자가 「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아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이에 보호자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에서 유아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4조 개정)

○ 주요내용

가. 타지역 거주 유아 보호자의 유아교육비 신청 접수(안 제4조)

-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신의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부모의 보호자로부터 유아교육비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접수하여,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함.

49.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9. 11. 22. • 마감일자 : 2020. 1. 2.

○ 우편대체 지급증서의 재발행 신청이 계좌가입국에서만 가능했던 규제 사항을 모든 우체국에서 할 수 있도록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23조(지급증서의 분실등으로 인한 재발행) 내용을 일부개정(' 16.8월)하였으며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TF의 검토결과(' 19.7월)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23조가 비규제로 확정됨에 따라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8조(규제의 재검토)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8조(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